

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

1.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(공기업 포함)의 결산총괄은,

○ 세입예산액 32,404,404,000원에,

수납액은 33,190,815,578원이며

○ 세출예산액 32,538,904,660원에,

지출액은 28,704,819,240원이다.

○ 그 차인잔액은 4,485,996,338원으로서

지방재정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원(임금 원, 이자 원)을

공제한 잉여금총액 4,485,996,338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.

○ 익년도 이월액중에는

• 명시이월 836,745,000원

• 사고이월 495,322,640원

• 보조금 집행잔액 109,013,9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
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,044,914,778원이다.

338

2. 1990년도 일반회계는

○ 세입예산액 30,779,671,000원에

수납액은 31,566,467,724원이며

○ 세출예산현액 30,914,171,660원에

지출액은 27,082,397,240원이다.

○ 그 차인잔액은 4,484,070,484원으로서

지방재정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

공제한 4,484,070,484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.

○ 익년도 이월액중에는

• 명시이월 836,745,000원

• 사고이월 495,322,640원

• 보조금 집행잔액 109,013,9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
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,042,988,924원이다.

원(원금 원, 이자 원)을

3. 1990년도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

가. 총괄결산상황은

○ 수입예산 1,624,733,000원에

수납액은 1,624,347,854원이며

○ 세출예산현액 1,624,733,000원에

지출액은 1,622,422,000원이다.

○ 그 차인잔액은 1,925,854원으로서

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○○특별회계 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원(임금 원,

이자 원)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총액 1,925,854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.

○ 익년도 이월총액중에는

- 명시이월 원
- 사고이월 원
-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
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,925,854원이다.

나.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

○ 세입예산 1,502,422,000원에

수납액은 1,502,821,378원이며

○ 세출예산현액 1,502,422,000원에

지출액은 1,502,422,000원이다.

○ 그 차인잔액은 399,378원으로서

지방재정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○○사업에 대한 기존채무상환액

이자 원)을 공제한 399,378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.

○ 익년도 이월액종에는

• 명시이월 원

• 사고이월 원

• 보조금 집행잔액은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
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9,378원이다.

원(임금

다.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

○ 세입예산 122,311,000원에

수납액은 121,526,476원이며

○ 세출예산현액 122,311,000원에

지출액은 120,000,000원이다.

○ 그 차인잔액은 1,526,476원으로서

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○○사업에 대한 기존채무상환액
원)을 공제한 1,526,476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.

원(원금

원, 이자

○익년도 이월액 증에는

- 명사이월 원
- 사고이월 원
-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

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,526,476원이다.

- 이하 회계별로 기재설명함.

라.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나(별채), 참고로 0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.

“없음”

(단위: 원)

회 계 명	세 입		세 출		세계잉여금	비 고
	예산액	결산액	예산액	결산액		
계						

4.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.